

대전지방법원 2021. 11. 2 선고 2020나1223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1. 11. 2 선고 2020나122329 판결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. 10. 15 선고 2019가단20620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송병주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1. 10. 5.

판결선고 2021. 11. 2.

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. 10. 15. 선고 2019가단20620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21.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9. 12. 28.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8. 12. 20. 접수 제34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지원 등기계 2020. 1. 2. 접수 제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‘2. 고치는 부분’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는 부분

- 제2면 아래에서 제9행 및 제4행의 각 “내용으로”를 각 “내용 등의”로 고친다.
- 제3면 제8행을 “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소외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논산시 G, H 및 지상물의 가액 합계 615,802,880원 +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661㎡의 가액 23,994,300원 + 이천시 J 도로 990㎡ 중 68.87/990 지분의 가액 4,563,600원의 총 합계 644,360,780원이 있고, 소극재산으로는 K은행 대출금 22,916,000원 + L단체 대출금 600,000,000원 + M은행 대출금 15,144,000원 + N조합 대출금 175,000,000원 + O은행 대출금

2,783,000원 +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무 210,000,000원 + P에 대한 판결금 채무 90,000,000원의 합계 1,115,843,000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.”로 고친다.

○ 제3면 제9행 및 제10행을 “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4 내지 6, 8, 9, 11, 12, 14 내지 1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”로 고친다.

○ 제5면 제5행의 “앞서 살피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”을 “위에서 인정하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, 즉”으로 고친다.

○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“송외”를 “소외”로 고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신순영, 판사 윤이진, 판사 안영화